

#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8호 2023. 11. 10.(목)

선 람	기 관 의 장

##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837호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	2
고성군 조례 제2838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	4
고성군 조례 제2839호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
고성군 조례 제2840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8
고성군 조례 제28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고성군 조례 제2842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	14
고성군 조례 제2843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고성군 조례 제2844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	25
고성군 조례 제2845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	28
고성군 조례 제2846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31
고성군 조례 제2847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33
고성군 조례 제2848호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9
고성군 조례 제2849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규 칙

고성군 규칙 제1262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43
---	----

##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3-20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51
고성군 고시 제2023-209호 2023년도 지적재조사 추가사업 측량·조사 위탁 고시 .....	54

## 공 고

고성군 공고 제2023-1643호 급경사지(하일학림N1지구)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55
---	----

회 람									
--------	--	--	--	--	--	--	--	--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37호

고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고성군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회원 수 5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시설
- 2.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
- 3. 6개월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성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

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 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 2. 미등록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
  - 3.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
  - 4. 미등록 경로당 위문품 지원
  - 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최초 지원일로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미등록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38호

고성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부터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청소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지원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홍보)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군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39호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지원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들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 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들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농업인들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고성군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 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의회 설치)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고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2.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0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7조(「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 을 “2028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40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1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장”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년 미만의”를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으로, “민간경력”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으로, “같이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속기관의 장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을 “군수는 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공무원” 을 “공무원” 으로 한다.

제23조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전단 중 “5일” 을 “7일” 로, “허가할” 을 “줄” 로 한다.

6.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6의2. 제6호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의 2를 제25조의2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개정후 2023. 11. 10.>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개정후 2023. 11. 10.>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제18조의2 관련)

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2호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및 물품운용관 지정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 1.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 물품: 해당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면장
- 2. 고성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권한 외에도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 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해당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를 받은 해당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고성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해당부서 물품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절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 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의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1. 매각 총량
-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 3. 동일 물품의 총량
-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 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을 따른다.

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 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해서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관리대상물품”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비품 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이전 연도의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명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4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소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2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원활한 검사 또는 검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에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이어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및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따른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통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고성군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군민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제5조 관련)**

1. 물품의 종류

- 가. 비 품: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 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 나. 소모품: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물품구분 기준

가. 비 품

- (1)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않은 물품
-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 (1)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 (2)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4)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3. 물품상태 분류기준

- 가. 신 품: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 나. 중 고 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
- 다.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 라. 폐 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제6조 관련)**

구 분	구 분 내 역
구 입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	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	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	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	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	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	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	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	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	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분 실	분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관 급	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 연 손 실	자연손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 리 전 환	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 류 전 환	물품을 분류 전환하는 경우
사 용 전 환	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 간의 이동
공 차	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 상 양 여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	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	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동의 경우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3호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부서장” 을 “담당 국장” 으로 한다.

제9조 중 “가져 올” 을 “가져올” 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100만원” 을 “50만원” 으로, “제34조제2항” 을 “영 제32조제2항”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할 지라도” 를 “할지라도” 로 한다.

제27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대부하는 경우

⑦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감면율은 30퍼센트로” 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분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 3.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일정기간동안” 을 “일정기간 동안”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건비,토지” 를 “인건비, 토지” 로 한다.

제41조 중 “이바지할수” 를 “이바지할 수” 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위치·규모” 를 “위치, 규모,” 로 한다.

제47조 중 “군수·부군수” 를 “부군수” 로, “공용주택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 을 “공용주택” 으로 한다.

제4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9조 단서 중 “1급·2급” 을 “2급” 으로 한다.

제51조 중 “비치정리” 를 “비치·정리” 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에해당하는” 을 “각 호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 을 “50만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4호

고성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
-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등) 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2항의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5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당항포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당항포관광지 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부대시설을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조성한 유원시설의 명칭은 고성군 당항포랜드(이하 “당항포랜드”라 한다)로 한다.

② 당항포랜드는 경남 고성군 회화면 당항만로 1116 일원에 둔다.

제3조(운영시간 등) ① 당항포랜드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이용권의 대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당항포랜드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항포랜드의 이용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대표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당항포랜드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이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

여야 한다.

- 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이용료의 처리)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다음날이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 당항포랜드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4. 시설물 이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8조(위탁관리) 군수는 당항포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당항포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당항포랜드 이용료(제4조 관련)**

구	분	이용료(원)	비 고
바이킹	소인	4,000	- 유아: 4세이하 - 소인: 5세이상~12세이하 - 성인: 13세이상
	대인	4,500	
범퍼카	소인	4,000	
	대인	4,500	
우주전투기	소인	4,000	
	대인	4,500	
슬라이딩카	소인	4,000	
	대인	4,500	
공룡열차	소인	4,000	
	대인	4,500	
아스트로	소인	4,000	
	대인	4,500	
범퍼보트	소인	6,000	
	대인	8,000	
	보호자+유아	8,000	
회전관람차	소인	4,000	
	대인	4,500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6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화 하며”를 “생활화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견시”를 “발견 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은”을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환경보전 기본시책”을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년차별”을 “연차별”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을 “고성군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군은 환경기본계획”을 각각 “군수는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군은”을 “군수는”으로,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을 “변경 시 환경계획”으로 한다.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사업시” 를 “사업이” 로, “강구·시행” 을 “마련·시행” 으로 한다.

제10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를 “법에 따라” 로 한다.

제11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환경위원회의 설치등)” 을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은 환경보전시책” 을 “환경보전시책” 으로, “군환경위원회” 를 “고성군 환경정책위원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기본계획” 을 “환경계획”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성 및 운영등 필요한 사항을” 을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자연환경의 보존)” 을 “(자연환경의 보전)”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군·군민·사업자는” 을 “모든 군민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설치등” 을 “설치 등” 으로, “강구” 를 “마련”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15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군은” 을 각각 “군수는”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한다” 를 “필요한 재정보조에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기술·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3.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제21조 중 “군은” 을 “군수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7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 따라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2. “동절기”란 11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고성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시작일 15시부터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시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는 제외한다)
  - 2.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고성군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숲나들e(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다만, 제3호는 제외한다)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반환 등) ① 납부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사용하려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및 배상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이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관리 운영)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제7조 관련)

○ 시설사용료 기준

구분	기준	사용기준	요금(원)		비 고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숙박 시설	A(4인실)	1동/1박	60,000	80,000	
	B(6인실)		100,000	120,000	
	C(6인실)		100,000	120,000	

※ 비 고

1.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및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2. 숙박시설의 1일 미만 사용 시에는 1일 사용료를 징수한다.
3. 숙박시설 인원초과 시 1명당 1만원을 징수한다. 다만, 7세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면제 기준

-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밖에 군수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주민등록표 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감면대상	대상기간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및 주중	성수기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및 주말	비고
1.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	
2. 고성군민		20%	20%	
3.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20%	-	
4. 국가보훈대상자		20%	-	

※ 비 고

- “성수기 및 주말“이란 성수기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앞날을 말하며,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 사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대상 1건에 대해 1객실에 한하여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고성군민 감면인 경우 사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다자녀 가정은 1가구 2자녀 이상으로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9조제2항 관련)

유 형	반환 및 배상기준	비고
<p>□ <b>관라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 배상</li> <li>-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30% 배상</li> </ul>	
<p>□ <b>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li> <li>-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li> <li>- 사용예정 당일 취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li>-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li> <li>- 사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li> <li>- 사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li> </ul>	
<p>□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료 전액 반환</li> </ul>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군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8호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
- 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에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해당하는 면 전지역을 말한다.
- 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 등의 설치·운영
- 2. 공공·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램 운영사업

- 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 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 설치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 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 6. 주민복지 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 지키미,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 8.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읍면장이 수립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 설치)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849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 을 “법 제11조제2항”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경상남도 경관 조례」” 를 “「경상남도 경관 조례」 제13조” 로, “도시디자인위원회” 를 “경관위원회” 로 한다.

1.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

2023년 11월 10일

고성군 규칙 제1262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시설 자체행사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 3. 학교, 청소년단체 주관 청소년 활동

③ 시설의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신청)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 여부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고성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청소년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2조 관련)

시설유형		시설명	운영시간	휴관일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고성군청소년센터 “온”	- 화요일~금요일 : 09:00~20:00 - 토요일 : 09:00~18:00	월요일, 공휴일
	청소년 문화의 집	고성동부청소년센터	- 화요일~금요일 : 09:00~18:00 - 토요일 : 09:00~18:00	월요일, 공휴일
청소년이용시설		고성하이청소년센터	- 화요일~금요일 : 09:00~18:00 - 토요일 : 09:00~18:00	월요일, 공휴일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청소년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

사 용 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장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부터 . . . : 까지			
사용인원	계	남	여	사용자 구 분
사용시설 및 설비	<input type="checkbox"/> 강 당 <input type="checkbox"/> 동아리방 <input type="checkbox"/> 프로그램실( ) <input type="checkbox"/> 체육활동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변경사항	사 유			
	기 간	변경 전	. . . : 부터 . . . : 까지	
		변경 후	. . . : 부터 . . . : 까지	
사용시설				
취소사항	사 유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성군수 귀하

■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청소년시설 사용허가서

사 용 자	단 체 명		전화번호	
	성 명 (대표자명)	(남, 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장소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부터 . . . . : 까지			
	(무대연습) . . . . : 부터 . . . . : 까지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사 용 료	금 액(원)			
	산출내역			
허 가 조 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한다.</li> <li>2. 시설, 설비 또는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한다.</li> <li>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멸실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한다.</li> <li style="padding-left: 20px;">4. 시설 사용 후 즉시 청소하고, 쓰레기는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li> <li>5.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li> </ol>			
<p>「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고 성 군 수</p>				







고성군 고시 제2023-208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8.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변경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055-670-26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영현면 연화리 159-2	영현면 연화산2로 449-3	2023.11.0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삼봉리)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	
2	삼산면 두포리 산325-11	삼산면 두포1길 236	2023.11.01.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영오면 영대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3	하일면 동화리 산41-2	하일면 동화3길 19	2023.11.01.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읍의 자연마을인 죽동마을의 지명을 활용한 도로	
4	상리면 척번정리 805외 1필지	상리면 척번정5길 50	2023.11.01.	건물번호부여신청	고성군 상리면과 사천시 정동면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첫글자를 따서 상정대로라 명명	

고성군 고시 제2023-209호

**2023년 지적재조사 추가사업 측량·조사 위탁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동2지구, 당동7지구, 당동9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위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9.

고 성 군 수

1. 책임수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

2. 고시내용

지구명칭	사업위치	필지수	면적(㎡)
<b>총 계</b>	<b>3개 지구</b>	<b>675</b>	<b>239,359</b>
당동2지구	거류면 당동리 304-2번지 일원	121	36,905
당동7지구	거류면 당동리 54-4번지 일원	219	92,680
당동9지구	거류면 당동리 139-1번지 일원	335	109,774

4. 위탁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5. 기타

고성군 공고 제2023 - 1643호

**급경사지(하일학림N1지구)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7.

고 성 군 수

1. 목적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급경사지 사면의 토사유실 및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높음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2. 주민의견 수렴 주요내용

- 행정예고 기간: 2023. 11. 7. ~ 11. 26.(20일간)
- 공고방법: 고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보 등
- 관련근거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3. 11. 7. ~ 11. 26.
-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전자우편(yjh0430@korea.kr)
- 제 출 처: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경남 고성군 안전관리과)
- 문 의 처: 고성군청 안전관리과 자연재난담당 담당자 양지훈 ☎ 055)670-2515

※ 제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 없음” 으로 간주

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대상지

지역명	위치	재해 위험도평가 (점수)	면적(m <sup>2</sup> )	지정사유	비고
급경사지(하일학림N1지구) 붕괴위험지역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산113-3번지 일원	D(64)	1,746	재해위험도 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역명	사업시기	예상사업비	사업내용
급경사지(하일학림N1지구) 붕괴위험지역	2024. 1. ~ 2025.12..	800백만원	급경사지 정비 1식 (계단식 옹벽 및 앵커설치)

※ 사업시기, 사업예산,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용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기사항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의 설치,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7.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함.

- 붙임 1. 위치도 및 전경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 전경사진





시점부 [시점 → 종점]



시점부 [종점 → 시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의견서

주 소

성 명

연락처

상기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 . .

제출인 : (서명,인)

고성군수 귀하